

『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4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4월 18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4월 26일

제2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김 종 울

나. 제안이유

- 「통합방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
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
제고하고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 - 현행 : 10명 이상 20명 이내
 - 개정 : 15명 이상 25명 이내
-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에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구미담당관을
당연직 위원으로 추가(안 별표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통합방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조 장 근

○ 본 『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
- 「통합방위법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가정보원 대구지부 구미담당관을 구미시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, 협의회 구성인원을 당초 “10명 이상 20명 이내”에서 “15명 이상 25명 이내”로 증원하여 구미시 통합방위 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